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69,879,297	26,096,379
일반회계		745,181,940	22,355,458
특별회계		124,697,357	3,740,921
	공기업특별회계	104,159,948	3,124,7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112,940	753,38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047,008	2,371,410
	기타특별회계	20,537,409	616,1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79,917	41,3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1,902	16,557
	주차장특별회계	2,292,744	68,782
	수질개선특별회계	16,312,846	489,38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78,39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